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공개편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목　　차 》

1. 정보공개제도란? 1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2

3. 불복구제 절차 6

4. 정보공개 청구서식 8

5. 정보공개 비용 12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5

1.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o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등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 대상 기관(방송통신 관련)

o 국가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o 기타 공공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 및 정보통신망(인터넷)불법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 직접 청구

□ 정보의 공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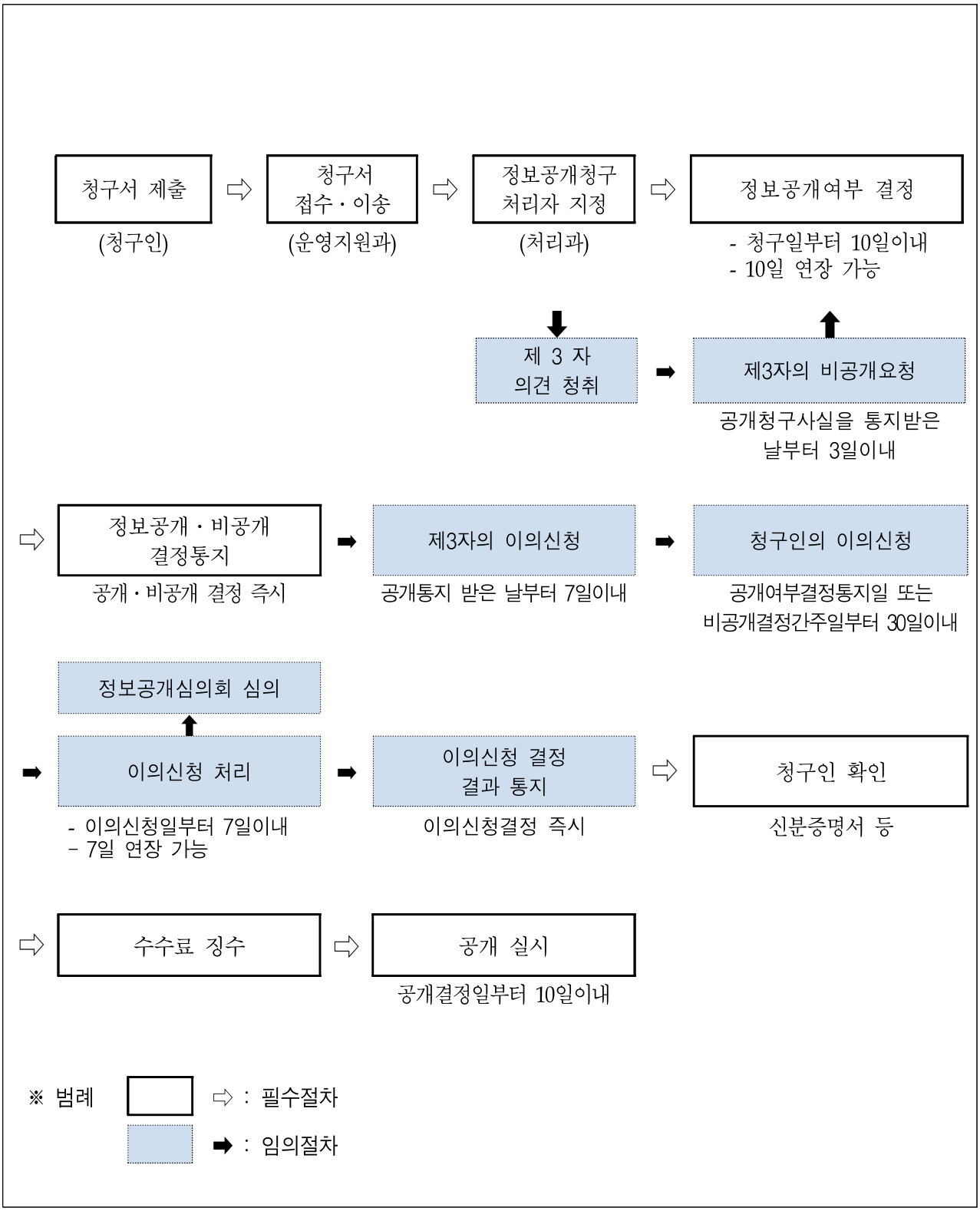
o 정보 원본을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출력물을 교부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 청구권자

o 모든 국민·법인 및 외국인(국내 거주 또는 체류 외국인에 한함)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o 청구방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가능

o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o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접수처)

o 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o 처리부서·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

o 이송 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는 이송을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소관기관을 안내

(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o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및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결정기간 기산 시 토요일 포함,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o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o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o 공개여부 결정 즉시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

o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공개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거나, 정보를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o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절차 명시

(5) 공개 실시

o 공개방법(**직접방문 시**)

- 본인 확인 필요가 없을 경우 :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송부
- 본인 확인 필요가 있을 경우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위임장 등 확인 후 공개

o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납부 : 수입인지 또는 온라인 납부(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좌이체)
- 공개결정통지서
- 필요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o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o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직접방문 시**)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6) 정보공개 종결처리

o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거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o 동일·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3. 불복구제 절차

□ 불복구제의 개념

o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1) 이의신청

o 신청권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o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o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o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2) 행정심판

o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o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

o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3) 행정소송

o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o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

4. 정보공개 청구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9. 13.>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정보 내용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해 당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 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사유의 경우, 단계: / 종료 예정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 관 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210㎜×297㎜[백상지(80g/㎡)]

5. 정보공개 비용

□ 청구인의 정보공개 비용 부담

o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부담

o 정보공개 비용은 '수수료'와 '우송료'로 구분됨

– 정보공개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

※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 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사유 소명자료 첨부**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감면비율 : 50%(**수수료의 50%**에 한함, 우송료는 **제외**)

- 우송료 : 국내통상 우편 중량별 요금표

중량	보통등기		익일특급	
	단위	수수료	단위	수수료
5g초과25g까지	1통	기본요금+2,100원	1통	기본요금+3,100원

*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
규 격	5g까지	400원
	5g초과 25g까지	430원
	25g초과 50g까지	450원
규격외	50g까지	520원
	50g초과 1kg까지까지	50g마다 120원 가산

□ 정보공개수수료 산정 기준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계획	충무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충무훈련 실시 결과 등, 을지태극훈련(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사후 보고, 사후 처리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등	제2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정보화 사업 관련 입찰 계약, 기술평가 정보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정보화 성과관리 및 수준평가	정보화 수준 평가, 성과 등 심사, 선정,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예산 배정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연간업무계획 수립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종합, 수립, 조정	정책수립 관련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지시사항 관리	국정과제, 지시사항 관리 자료로서 대내·외 협의 및 조정 중에 있는 사안	제5호
		방송통신정책 융합정책연구	정책 수립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연구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부업무 평가	정부업무평가 계획 등 자료,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평가시행계획 수립, 자체평가 결과 등	제5호 제6호
		본부 조직 정원 관리	자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관련 자료	제5호
		총액 인건비제 관리	총액인건비 세부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자료	제5호
		방송통신민원센터 운영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소송수행 및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소장, 답변서 등의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국무·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자료지원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결정과정에 있는 내부검토 자료	제5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 중 취득한 법인의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행정규제정비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제5호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 개선과제 선정 및 검토 관련 자료	제5호
		임·직원선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선임 등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 및 지원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성과관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국제협력담당관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	제2호
		WTO, FTA 협상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제2호
		아시아, 미주 등 지역협력 APEC, OECD 등 협력 활동	구주·아프리카 지역 등 방송통신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협의에 관한 사항 OECD, APEC, ASEAN, ASEM 등 국제기구와의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제5호 제2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정책국	방송미디어 정책기획과	공영방송 정책수립	공영방송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의견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방송법령 제·개정	방송법 및 시행령의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소유·겸영규제 개선	공영방송 소유·겸영규제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 검토 및 경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제7호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상파방송 인허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승인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7호
		지상파방송 사업 관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 등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정보	제5호 제7호
	방송지원정책과	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및 변경승인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의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7호
		뉴미디어 사전동의	PP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제5호 제7호
	지역미디어정책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및 지원정책 수립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의견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상파DMB 방송 사업 관리	지상파DMB사업자의 (재)승인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 검토 자료	제5호 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금지행위 관련 법 제도 정비	정보통신망법 등 금지행위 법령 제·개정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통신분쟁조정팀	통신분쟁조정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분쟁당사자들간의 개인정보 및 기업영업비밀, 조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디지털이용자기반과	불법광고성 정보 규제·단속	규제·단속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사업자 정보, 제재조치를 위한 내부 검토 자료	제5호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스팸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관계기관 협의,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위치정보 정책 및 법령 정비	위치정보법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위치정보 허가 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의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7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수립	불법 음란물 등과 같은 불건전 정보유통을 온라인상에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술적 조치,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정보통신망 상 이용자보호 정책 및 법령정비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시장조사심의관	조사기획총괄과	방송통신 불공정행위 조사 및 관리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사관의 출장내역	제5호
	통신시장조사과	방송통신 불공정행위 조사 및 관리	통신사업자 대상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사관의 출장내역, 사업자로 제출받은 자료	제5호 제7호
	부가통신 조사지원팀	방송통신 불공정행위 조사 및 관리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사관의 출장내역,	제5호 제7호
	방송시장조사과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조치	조사 계획의 수립, 불공정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사관의 출장내역	제5호 제7호
		방송사업자 시청자 이익저해행위 조사	조사 계획의 수립, 이익저해행위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사관의 출장내역	제5호 제7호
		방송통신 방송분쟁 조정 및 알선	분쟁조정과 관련된 분쟁당사자들간의 개인정보 및 기업영업비밀, 조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 진흥기획과	홈쇼핑채널 (재)승인 및 정책수립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하여 신청법인 등이 제출한 심사 서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	제6호, 제7호
			홈쇼핑 (재)승인 관련 정책 및 심사를 위하여 신청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정보	제5호
			홈쇼핑 사업자와 관련된 수사·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우리 위원회가 작성·제출한 자료	제4호, 제6호, 제7호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및 정책수립	데이터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하여 신청법인 등이 제출한 심사 서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	제6호, 제7호
			홈쇼핑 (재)승인 관련 정책 및 심사를 위하여 신청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정보	제5호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와 관련된 수사·소송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우리 위원회가 작성·제출한 자료	제4호, 제6호, 제7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행정처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포함) 행정처분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사업자)가 소명 등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제6호, 제7호
			홈쇼핑(데이터홈쇼핑 포함) 행정처분 과정에서 처분 대상자(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미디어진흥국	방송미디어 진흥기획과	홈쇼핑 상생협력	홈쇼핑(데이터홈쇼핑 포함) 상생협력 사업 또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제7호
		PP 등록 및 변경 등록 ·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 신고 등을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경영 정보	제7호
			PP 등록 및 변경 등록 · 신고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개인정보	제6호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심사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심사를 위하여 외국방송 사업자 및 국내 대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경영 정보	제5호, 제7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 정보	제7호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심사 결과 중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 및 심사위원 명단	제5호, 제6호
		외국인 고용 심사	외국인 고용 심사를 위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의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
			외국인 고용 심사를 위해 제공받은 정보	제6호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요금승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승인신청자료	제5호
			등록·승인을 위해 제출된 해당 기업의 이용요금 산출근거(손익)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미디어진흥국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 인허가 등 심사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제5호
			심사결과보고에 관한 정보	제5호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회의 및 심사자료	제5호
			방송·통신 사업 인·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제7호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7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기반국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	방송광고진흥공사 관리·감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의견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우수 프로그램 시상 지원	시상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의견	제5호
	방송광고정책과	방송광고 규제 개선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제5호
		방송광고 관련 법·제도	방송광고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5호
		협찬고지 정책 수립 및 시행	협찬고지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편성평가정책과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 수립 및 시행	프로그램편성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 및 조사	방송평가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위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정보, 제재조치를 위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6호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 경쟁체제 정책 및 제도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운영지원과	행사계획 및 수립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제6호
		국·내외 훈련 및 교육훈련 일반	교육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6호
		인사일반 및 퇴직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징계·상훈	인사 평정, 징계, 상훈 등 관련 행위를 하기 위한 내부 검토 및 조사 자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제5호 제6호
		공무원노조 지원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계약 및 지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감사담당관	공무원범죄 신고처리 및 결과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범죄신고 및 처리서류 등	제5호 제6호
		일상감사	현지조치사항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제5호
		공직자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제1호
		자체감사 및 결과보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본부 보안업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및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제2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국명	부서명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스팸조사 및 수사	조사 계획의 수립, 스팸 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 및 방법, 조사관의 출장내역	제4호 제5호 제7호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의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7호
		애니메이션 판정	애니메이션 판정승인 심사에 따라 수집된 사업자의 정보 및 인허가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제7호